



서울고등법원

제 5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나20012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옥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김문선

3.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션

담당변호사 김영수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변명섭

5.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케이

담당변호사 권창목



6.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이현

담당변호사 박진구

피고(탈퇴)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H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7. 주식회사 I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우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4가합52470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72,614,6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9,491,345원, 피고 주식회사 D는 28,443,775원, 피고 주식회사 E은 17,334,550원, 피고 주식회사 F는 5,771,402원, 피고 G 주식회사는 9,366,620원, 피고 주식회사 H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I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J는



49,054,1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은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위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음반¹⁾의 음반제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 5면 각주 1) 1~2행의 "주식회사 Q 주식회사"를 "Q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11면 18행의 "8곡의"를 "8곡을"로 고쳐 쓴다.
- 12면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제1심판결의 약어로 가수 L의 1집 음반 <P>(이 사건 제1 음반), 2집 음반 <M>(이 사건 제2 음반)를 뜻한다.



『원고가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진술한 대로 위 BC와 AX은 실제 이 사건 제1 음반의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음반의 표지 뒷면에 프로듀서로 함께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²⁾,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 당시 제작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 즉 'AM(주)'(이하 'AM'이라 한다), 'AN사'는 제작과는 무관한 단순한 유통사에 불과하고 원고만이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에 따른 손익과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① 갑 제4호증의 4³⁾, 갑 제27호증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음반을 제작할 당시 레코딩 엔지니어로 참여한 AV이 ㉠ 자신이 근무하던 스튜디오의 본사인 AM 대표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고, ㉡ AM은 앨범 제작이 완성되면 유통을 AM이 맡는 조건으로 앨범 제작과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에게 유통선수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AM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음반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사용료 약 1,000만 원과 엔지니어 인건비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정도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AM과 원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AM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유통선수금이 전부 얼마인지, 그 유통선수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제1 음반의 제작 과정에서 원고와 AM의 구체적인 역할 및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제2 음반 발매 시 AN사로부터 금원

2)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같은 취지의 AX(본명 AY)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제1심에서 제출된 AV 확인서

4) 당심에서 제출된 2026. 5. 24.자 AV 확인서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도 않고 밝힐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위 신문 당시 'AN사는 이 사건 제2 음반 발매 시 유통사로서 약 2~3년간 계약관계에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음반의 발매 당시 원고와 AN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각자가 부담한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 12면 14행의 "않았다." 뒤에 각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음반이 제작된 후 30년간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작비 지출 증빙을 제출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는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이 제작된 1994년과 1995년 당시 자신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는 이외에 제작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여 이 사건 각 음반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도, 당시 원고와 원고가 단순한 유통사라고 주장하는 AM, AN사와의 계약 내용과 자금의 흐름 및 정산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AM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유통수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그 자금 마련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부분의 주장을 충분히 보충하지도 못했다.』

○ 13면 1행의 "않는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AO 거래내역(갑 제25호증의 1 내지 4)을 추가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2010년 이후의 자료로서 이 사건 각 음반의 발매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료이다.』

○ 13면 11~14행의 "2020. 8. 26. 답변하였고,"를 삭제하고, 18행의 "(을마 제 6, 7호증)."을 "(을마 제7호증).⁵⁾⁶⁾"으로 고쳐 쓴다.

○ 14면 4행의 "AW이"를 "AW, AZ가"로, 7~8행의 "이 사건 각 음반의 보이지

5) 한편, 위 사단법인 AJ 사실조회 회신에는 '원고가 2004. 3. 11. 사단법인 AJ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가 2005. 10. 12.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신탁 전 유통사인 (주)BB와의 유통계약 해지를 전제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1호증(2018. 3. 21.자 사단법인 AJ의 보상금 등록 확인서)상 원고의 보상금지급신청일은 2004. 3. 11.로 기재되어 있다].

6)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단법인 BA 발행의 '보상금 회원 가입 증명서(2026. 7. 3.자)'와 '보상금 분배 대상 음반(음원) 증명서(2026. 7. 3.자)' 또한 이미 제출된 위 갑 제1호증이나 갑 제23호증(2026. 5. 13.자 사단법인 AP 확인 공문)과 그 증거가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도 않는다(갑 제4, 11, 12, 14호증)."를 "이 사건 각 음반의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약관계나 자금의 흐름을 비롯하여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갑 제4, 11, 12, 14, 26 내지 29호증)"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음반의 표지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저작권법 제6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각 음반의 음반제작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64조의2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음반의 표지에는 "All composed, written, arranged & produced by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음반의 표지에는 "PRODUCER: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음반에 '음반제작자로서의 실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8

재판장 판사 강성훈

 판사 송혜정

 판사 김대현